

선박해양공학심화과정 재이수교과목 승인절차 내규

제1조(목적) 이 내규는 선박해양공학심화과정 학생들의 재이수 교과목 신청 및 승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대상) 선박해양공학심화과정 재학생 전원을 적용대상으로 한다.

제3조(승인절차) ① 교과목 재이수를 희망하는 학생은 수강신청 전에 상담 지도교수와 면담하여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고 학과장 승인을 신청한다.

② 학생이 지도교수 및 학과장 승인을 받은 후에는 수강신청을 인정한다.

③ 학생은 수강신청 후 수강신청내역확인서에 지도교수 확인서명을 받아 학과사무실로 제출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내규는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